

공 시 송 달 공 고

국유재산법 제49조 1항에 따라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를 2회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목: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사전통지
2. 법적근거: 국유재산법 제72조, 동법 시행령 제71조,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3. 공고대상자 및 내역

점유자	점유지	점유면적	연간사용료	부과기간	변상금 예정금액
모*아 (행*한 가게)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80	150.09㎡	36,193,300원	2019. 8.16.~ 2019.12.31.(138일)	16,420,850원

※ 산출 서식: 연간사용료×부과기간/365×120%

4. 공고기간: 2020. 2. 26. ~ 2020. 3. 11.
 5. 의견제출 기간: 2020. 3. 11. 까지
- ※ 기한 내 별도 의견이 없을 경우 동의한 것으로 보아 변상금 부과·고지할 예정

6. 의견제출 내용

- 가.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 나.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 다. 변상금 분할 납부신청서(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7. 기타문의 안내

- 가. 서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전화 02)6967-9223, 팩스 0505-005-1101)
- 나. 주소: 서울시 종로구 종로 6, 9층

2020년 02월 26일

서울지방우정청장

[붙임 1]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서식]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변상금 사전통지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에 이의가 있어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항 목	통지 내용	의 건

〈그 밖의 의견〉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지방우정청장 귀하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

[붙임 2]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3.6.24>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과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	------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사유	
------	--

신청내용	재산의 표시	부과대상	변상금(원)	유예신청금액(원)	징수유예기간
					()개월
					()개월
					()개월
					()개월
					()개월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9조제3항에 따라 위 재산의 변상금 징수유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지방우정청장 귀하

첨부서류	징수유예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	-------------------------	------------

[붙임 3]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6.24>

국유재산 []사용료 []매각대금
[]대부료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	------	------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재산의 표시			신청면적 (㎡)	신청사유	분납방법	비고
	①	②	③				
	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						
						1년에 ()회	
						1년에 ()회	
						1년에 ()회	
						1년에 ()회	
						1년에 ()회	
	나. 매각대금, 변상금의 경우						
						()년에 ()회	
					()년에 ()회		
					()년에 ()회		
					()년에 ()회		
					()년에 ()회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6조제2항 또는 제49조제3항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료, []매각대금, []대부료, [✓]변상금)을(를) 나누어 내려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지방우정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	-----	------------